



**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)**

[시행 2025. 3. 12.] [대통령령 제35382호, 2025. 3. 12., 타법개정]

환경부 (녹색기술개발과) 044-201-6671, 6672

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환경시험·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)** 환경부장관은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·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·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**제3조 삭제** <2012. 7. 31.>

**제4조 삭제** <2012. 7. 31.>

**제5조 삭제** <2012. 7. 31.>

**제6조 삭제** <2012. 7. 31.>

**제7조(시험·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)**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·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5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사업자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.<개정 2009. 12. 24., 2011. 6. 24., 2011. 10. 28., 2016. 9. 22., 2016. 11. 29.>

1. 국공립 연구기관
2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4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
5.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
6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
7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
8. 환경시험·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9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

③ 환경부장관은 시험·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기관(국립환경과학원만 해당한다) 및 제4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<신설 2012. 7. 31.>

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·단체나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,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2. 7. 31.>

1. 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
2.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
3. 사업결과의 성과 활용 계획
4. 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
5. 협약의 변경·해약·위약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

**제8조(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)**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시험·분석방법이 없고, 환경부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(이하 “공정시험기준”이라 한다)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
2. 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시험·검사 방법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

**제9조(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)**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것
  2. 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할 것
- ②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**제10조(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)** ④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(이하 “검사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,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7. 31., 2022. 8. 16.>

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능력
    - 가.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간이측정기(이하 “간이측정기”라 한다) 성능인증 업무의 경우: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것
      - 1) 대기 분야: 3명 이상
      - 2) 수질 분야: 3명 이상
      - 3) 소음 분야: 2명 이상
      - 4) 먹는물 분야: 3명 이상
      - 5) 실내공기질 분야: 3명 이상
    - 나.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 정도검사(精度檢査) 업무의 경우: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것
      - 1) 자동차 분야: 6명 이상
      - 2) 대기 분야: 5명 이상
      - 3) 수질 분야: 5명 이상
      - 4) 소음·진동 분야: 2명 이상
      - 5) 토양 분야: 5명 이상
      - 6) 먹는물 분야: 3명 이상
      - 7) 실내공기질 분야: 4명 이상
    - 다.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정용품(이하 “교정용품”이라 한다) 검정(檢定) 업무의 경우: 4명 이상
  2.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,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에 필요한 분야별 시설 및 장비[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는 이를 보유한 자(다른 검사기관은 제외한다)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]
-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,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[제목개정 2012. 7. 31.]

**제11조(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)**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 <개정 2012. 7. 31.>

1. 대표자 또는 상호

2. 영업소의 소재지
3. 검사 분야 또는 검사 대상 기기
4. 기술능력
5. 시설 또는 장비

[제목개정 2012. 7. 31.]

**제12조(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)**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,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7. 31., 2017. 7. 17., 2022. 8. 16.>

1. 기술능력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 것
    - 가.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추 것
      - 1) 대기 분야: 3명 이상
      - 2) 수질 분야: 3명 이상
      - 3) 소음·진동 분야: 1명 이상
      - 4) 실내공기질 분야: 3명 이상
      - 5) 약취 분야: 2명 이상
    - 나.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추 것(소음·진동 분야는 제외한다)
    - 다.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(소음·진동 분야는 제외한다)
  2.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
    - 가. 실험실(소음·진동 분야는 제외한다)
    - 나. 측정하려는 항목을 시험·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[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는 이를 보유한 자(다른 측정대행업자는 제외한다)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]
  3. 삭제 <2022. 8. 16.>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,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 7. 31., 2022. 8. 16.>

**제13조(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)**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1. 대표자 또는 상호
2.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
3. 측정대행 항목
4. 기술능력
5. 실험시설 또는 장비

**제13조의2(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)** 법 제16조제7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

1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
2.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및 제2종사업장

[본조신설 2020. 9. 29.]

[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5로 이동 <2020. 9. 29.>]

**제13조의3(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)**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“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
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환경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
-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사업계획서
  2.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·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  3. 별표 1 제3호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
-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.
-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,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- ⑥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1. 측정대행계약 실무의 개발·보급 촉진 및 관련 법·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·연구
  2.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대행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·홍보
-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.
1.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실적
  2.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의 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
- ⑧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20. 9. 29.]

**제13조의4(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)**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9. 29.]

**제13조의5(시험·검사기관 등)**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시험·검사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 1. 14., 2016. 1. 19., 2016. 12. 20., 2017. 1. 17., 2017. 7. 17., 2018. 1. 16., 2018. 10. 16., 2018. 12. 11., 2020. 9. 29., 2024. 3. 5.>

1.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
2. 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
3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
4.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3조제7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기관
5. 「악취방지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
6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(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·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)
7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오염도검사기관
8. 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
9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의2제4항, 제30조제1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,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및 오염물질 측정기관
10.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
- 10의2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(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·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)
11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·검사를 하는 자

12.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
13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기·수질, 먹는물 또는 소음·진동 분야 등에 대한 정도관리를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
-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③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별 판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: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·검사 능력과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판정
  2. 시험·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: 시험·검사기관의 기술인력·시설·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·평가하여 판정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- [본조신설 2012. 7. 31.]  
[제13조의2에서 이동 <2020. 9. 29.>]

- 제14조(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)**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20. 9. 29.>
-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는 다음과 같다.
1. 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
  2. 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

- 제15조(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)**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,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, 제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며, 그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은 별표 4와 같다. 다만, 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9. 29.>
- ② 제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.
- ③ 제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.
-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.
-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. 다만,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.
- ⑥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회 이상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정도관리 과목을 면제한다.<신설 2012. 7. 31., 2020. 9. 29.>
- ⑦ 제1차 시험의 합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2차 시험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.<신설 2012. 7. 31.>
- ⑧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합격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12. 7. 31.>
- ⑨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2. 7. 31.>

- 제16조(기술개발의 지원 대상)** 법 제25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”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·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.

**제17조(권한의 위임)**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, 제2호, 제2호의3, 제3호, 제4호, 제4호의2, 제4호의4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(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·제1호의2·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)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대도시 시장(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2. 7. 31., 2018. 12. 11., 2020. 9. 29., 2021. 12. 16., 2022. 8. 16.>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, 제4호의3, 제6호 및 제7호(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)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.<개정 2012. 7. 31., 2018. 12. 11.>
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.<개정 2012. 7. 31., 2017. 7. 17., 2022. 8. 16.>

1.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
- 1의2. 법 제7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
- 1의3.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, 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수리(受理)
- 1의4. 법 제9조제2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의 승인·취소 또는 조치명령
- 1의5. 법 제9조제3에 따른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
2. 법 제1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·변경승인·수입신고의 취소 및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
3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
4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의 검정
5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
6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
- 6의2.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·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의 실시와 그 판정,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·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조치명령
7.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·검사
8. 법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문

**제17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** 환경부장관(제1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시·도지사, 대도시 시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1.>

1. 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에 관한 사무
2.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
3.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장 출입·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

[본조신설 2012. 1. 6.]

**제17조의3(규제의 재검토)**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신설 2022. 3. 8., 2025. 3. 12.>

1. 제13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의 범위: 2022년 1월 1일

2. 삭제 <2025. 3. 12.>

3. 제13조의4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: 2022년 1월 1일

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<개정 2014. 12. 9., 2020. 9. 29., 2022. 3. 8., 2025. 3. 12.>

[본조신설 2013. 12. 30.]

**제1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**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 <개정 2020. 9. 29.>

[전문개정 2011. 4. 5.]

**부칙** <제35382호,2025. 3. 12.>(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